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대면 방식의 의결권·선거권 근거 마련 등〉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97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 선거권 행사 (안 제23조의2 신설)	2
2.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등 행사시 원격영상회의 의무화 (안 제23조의3 신설)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1.

다. 회 부 일 : 2024. 8.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을 통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을 통한 자조적 가치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선거권 행사 (안 제23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선거권 행사 - 조합원은 협동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의무 ①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 ② 투표기록을 3개월 간 주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 청구시 이에 따라야 함 (해당 투표기록은 5년 간 보존)

현행법은 조합원이 총회에서의 의결권·선거권을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¹⁾ 개별 협동조합이 정관 등으로 의결권 등 행사방식을 서면이나 전자투표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²⁾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협동조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시적·예외적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총회·서면의결을 허용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최근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정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 분포나 사업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는 협동조합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경우 전통적인 대면 방식의 투표는 행사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투표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협동조합의 지역적 기반(조합원 및 사업 지역)]

(단위: %)

구 분 (조사대상=1,110)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전국	계
조합원의 지역적 분포 범위	8.2	32.3	19.8	39.7	100.0
조합의 핵심 사업지역 범위	5.3	34.0	21.7	39.0	100.0

※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p.287

또한,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확산 등으로 다수의 집합이 제한되는 경우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하여 대면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 협동조합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3)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3)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

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비대면 방식의 의결권·선거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참여와 토론을 통한 자조적 가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인적 결사체(人的 結社體)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검토될 필요가 있겠음.

둘째,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해당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비대면 방식의 의결권·선거권 행사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허용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가입, 출자·책임, 의결권·선거권, 탈퇴 및 제명 등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⁴⁾

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인적결사체로서의 성격 및 민주적 운영원칙에 있어서의 대면토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의 의결권·선거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기보다는 감염병 확산, 재난 등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개별 협동조합법의 경우 비대면 의결권 행사 규정이 없거나⁵⁾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⁶⁾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법무부는 개정안은 비대면 방식의 투표 도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방법만 정관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다양한 규모·형태를 가진 협동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⁷⁾

5)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7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④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상법」의 경우 서면투표는 “정관”으로,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23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 ① 조합원은 협동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u> <u>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u> <u>③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주사무소에 갖추어 조합원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고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 <u>④ 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2.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등 행사시 원격영상회의 의무화 (안 제23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등 행사시 원격영상회의 의무화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여야 함

개정안은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협동조합은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임.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조합원도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되어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조합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협동조합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비대면 방식의 의결권 등 도입 자체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전제로 한 원격영상회의 의무화는 논의는 불요하며, 「상법」, 「민법」 및 개별 협동조합법 등 관련 다른 법률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규정한 사례를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비대면 방식의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2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제23조의2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이 해당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조합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원격영상회의에 참여한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u> <u>③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문 의 처

02)6788-5151